가계부채 위기와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

2016.6.1

전성인 (홍익대 경제학부)

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의 재검토

- 특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위기를 초래할 것인가?
 - "LTV, DTI 규제가 있으므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."
- 금융시장 전체의 체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?
 - "가계부채의 규모는 크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."
- 채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할 것인가?
 - "과도한 채권 추심이 정상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다."
- 채무자의 인적 자본(human capital)을 훼손할 것 인가?
 - "부채 계약의 무조건적 이행 요구는 궁극적으로 채무 자를 생산으로부터 괴리/소외시키고, 그가 보유한 인 적 자본을 훼손시킬 것이다.

부채 탕감의 정태적 효과

- 기본적인 정태적 효과
 -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일회적인 부(wealth)의 재배분
 - 부채 상환의 경우와 비교할 때, 부채 탕감은 채권자의 부를 감소시키고 채무자의 부를 동액만큼 증가시킴
 - 사회적 부의 총량은 불변
 - => 부채 탕감은 사회적 부의 총량과는 무관
- 부채 징수 비용과 부채 상환 회피 노력의 비용
 - 부채 징수의 비용은 대부분 양수(+)
 - 부채 상환 독촉이 심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경주 => 부채 상환 회피 비용의 발생
 - ⇒부채 징수의 사회적 비용은 양수
- ⇒ 부채 탕감은 **오히려 사회적 부의 수준을 더 잘 보존**

부채 탕감의 동태적 효과

- 언필칭 "도덕적 해이"
 - "빚은 꼭 갚아야 한다"
 - 부채 탕감은 채권자로 하여금 신용 공여를 주저하게 만들 어 신용거래를 위축시키고, 이자율 상승을 초래
 - ⇒투자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본 축적을 저해
- 인적 자본의 훼손
 - 지불 능력을 상회하는 상환 독촉은 채무자를 생산 현장으로부터 괴리/소외 시킴
 - 파산자: 사회적 낙인, 신용거래 금지
 - 도피자: 생산으로부터의 괴리/소외 => 생산 능력의 상실

=> 결국 부채 탕감의 동태적 효과가 부정적인지 긍정 적인 것인지 <mark>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.</mark>

위험 가중 금리와 부도 보험

- 과연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부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? =>
 NO!!!
- 금융기관은 채무자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차별화된 위험 가중 금리를 적용중
 - 위험 가중 금리 = 기준 금리 + 위험 할증(risk premium)
 - 위험 할증은 해당 채무자의 부도 확률(default probability)과 부도시 손실액 (loss given default)에 의해 산정됨
 - 위험 할증료는 부도 위험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료
- 위험 가중 금리 대출은 금융기관이 <u>"순수한 채권자" + "신용보증보</u> <u>험"</u>을 겸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
 -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험 할증료는 일종의 신용보증보험료
 - 사전적으로 보험료까지 받은 금융기관이 부도 상황에서도 채무 상환을 고 집하는 것은 보험료를 받은 보험회사가 정작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겠다는 것과 흡사
 - ⇒신용보증보험 회사로서의 **금융기관의 "도덕적 해이"**
 - ⇒상환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<mark>묻지마 대출</mark> => 과잉 대출 귀결

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의 두 얼굴

-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.
 - 또는 "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존치하는 것이 때로는 처방일 수도 있다."
- 신규 대출의 경우 균등 분할 상환은 OK
 -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 수입은 줄어들지만
 - 채무자의 경우 (유동성 압박이 없는 경우) 이자 지급 규모는 감소
- 그러나 부채 상환의 어려움이 부각되는 상황에서, 기존 대출을 원리 금 균등분할 상환형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은 신중해야
 - 금융기관의 경우 부도에 노출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선호하지만
 - 채무자는 불시에 매기 상환금액이 급증함으로써 위기 봉착
 - 이는 사실상 "비 올 때 우산 뺏는 정책"이 될 수 있음
 - 비교: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기존 대출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하라고 요구한다면??

=>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부채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경우 <u>"무조건 만기 연장"</u>이 더 적절한 정책처방이 될 수 있다.

채무조정제도 개편의 기본방향

- 받을 권리가 소멸된 채권은 못 받게 하라
 -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엄중 처벌
- 갚을 능력이 없는 채권은 탕감해 주어라
 - 개인파산, 개인회생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
- 갚을 능력이 부족한 채권은 이자만 갚게 하라
 - 취약 계층의 기존 대출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금지 + 원칙적 만기 연장
- 채무자가 채권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도록 만들어 주어라
 - 서민금융진흥원의 채권자 이익단체화 통제
 - 채무자 대리인에 의한 사전계획안 제도 도입/활성화